

의안번호	제643호
의결 연월일	2014년 월 일 (제 329 회)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3월 3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643

제출연월일 : 2014년 3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행정분야의 법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사이버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목적규정에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도록 범위 추가 (안 제1조)
 -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행정분야로 상담 확대
- 사이버 상담을 위해 외부 변호사 위촉가능 규정 마련 (안 제6조)
- 현실 불부합한 용어 정비 (안 제2조, 제3조, 제10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 및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의 도민 권리이익의 보호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궁금 사항을 사이버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에 다가선 법무행정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상담실”을 “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(이하 “상담실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상담사항”을 “상담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”를 “상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 주민”을 “그 밖에 도민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면담, 서면 또는 전화”를 “면담, 서면 또는 전화, 인터넷”으로 한다.

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사이버 무료법률 상담과 관련하여 외부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제2항 중 “서면문의”를 “서면 또는 인터넷 문의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행정서사”를 “행정사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상담자문위원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
실비변상조례”를 “상담자문위원 및 사이버 무료법률 상담 변호사에게는
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의익을 보호하기 위한 충청북도행정법규상담실(이하 "상담실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 및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의 도민 권리의익의 보호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궁급 사항을 사이버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에 다가선 법무행정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</u>
제2조(설치) <u>상담실은 도 법무통계담당관실에 둔다.</u>	제2조(설치) <u>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(이하 "상담실"이라 한다)-----.</u>
제3조(상담사항) <u>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.</u> 1.~5. (생략) 6. <u>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사항</u>	제3조(상담범위) <u>상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1.~5.(현행과 같음) 6. <u>그 밖에 도민-----</u> -----
제5조(상담방법) <u>상담은 면담,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</u>	제5조(상담방법) ----- <u>면담, 서면 또는 전화, 인터넷 -----</u> -----.
제6조(상담관) ①~③ (생략) <u>< 신 설 ></u>	제6조(상담관) ①~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사이버 무료법률 상담과 관련하여 외부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

현행	개정안
제8조(상담처리) ① (생략) ② <u>서면문의</u> 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. ③~④ (생략)	제8조(상담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서면 또는 인터넷 문의</u> ----- ----- -----. ③~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자문) ① (생략)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, <u>행정서사</u> ,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.	제10조(자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행정사</u> ----- -----.
제13조(실비변상) <u>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</u>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3조(실비변상) <u>상담자문위원 및 사</u> <u>이버 무료법률 상담 변호사에게는</u> <u>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</u> <u>원회</u> <u>실비변상조례</u> 」 ----- -----.

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2014년 시행되는 충청북도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계획에 따라법률 상담관으로 외부 변호사를 위촉하여 도민의 법률 상담 처리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외부 전문가(변호사)의 법률상담관 위촉으로 상담료 등 수당, 여비 등 실비 지급 수요 발생

3. 관련조문 : 안 제6조(상담관), 안 제13조(실비변상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외부 전문가(변호사)의 상담법률관 위촉에 따른 지급 수요 규모는 충청북도 연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변동 없이 매년 발생

나. 추계결과 : '14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,500만원 정도 소요(300만원×5년)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 ※ 매년 도비 300만원 예산 확보하여 운영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4년)	2차년도 (2015년)	3차년도 (2016년)	4차년도 (2017년)	5차년도 (2018년)	계
세 출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	15,000
법률상담관(변호사) 상담료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	15,000

6. 작성자 : 법무통계담당관 김 태 왕